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 - 6호

2026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근무기간	채용인원	담당업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약정일~1년 (주 40시간)	1명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지방자치법 제47조~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등 지원

1.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 연장 시 총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정책 지원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대학원, 부설 연구소 포함), 민간기업*에서 행정, 법무, 예산, 결산, 감사, 조사, 연구 관련 실무 경력자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사무실에 한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 계산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경력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개별 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경력2/경력3

다. 근무경력의 인정 등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①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주 40시간)

②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text{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text{시간선택제 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1개월은 30일로 일괄 적용
*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③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세 부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6. 8. 12.(수) ~ 8. 14.(금) [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1.(금)	
면접시험	2026. 8. 31.(월) **[예정]**	
면접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중	

※ 공고 및 발표는 부평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icbp.go.kr) > 의회소식 > 공고 > 기타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12.(수) ~ 8. 14.(금) **[3일간]**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방문접수 : 부평구의회 총무팀(부평구의회 1층)

(접수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부평구 수입증지 : 1층 하나로민원과 판매 (7,000원)

○ 등기우편 접수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

*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00) 유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부평구의회 총무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 (☎ 032-509-7013)

다. 제출서류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원서 1부 * (방문접수) 부평구청 1층 하나로민원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총무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서식 1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	서식 2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5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연락처, 날인(서명)**이 있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서식 5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서식 7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격 증빙에 필요한 경우 제출
10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원본 지참(확인),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	
11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보수 및 복무

1. 보 수

채용분야	직 급	연 봉	산출내역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50,272천원	7급(상당) 하한액 기준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2026.1.2.기준), 제35조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복 무

채용분야	직 급	근무장소	근무시간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약정해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 시(업무태만, 근로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부평구의회 총무팀(☎ 032-509-7013)